

대부업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목 차 >

총 칙	1
재무상태표 계정	2
제 1 절 자 산	3
제 2 절 부 채	20
제 3 절 자 본	24
손익계산서 계정	28
제 1 절 수 익	29
제 2 절 비 용	35

총	칙
---	---

□ 서설

이 대부업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은 대부업(매입채권추심업 포함)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중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법인에 대해 사용을 권장합니다.

기타 대부업자의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부분에 대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이 아닌 개인 및 소형 대부업자의 경우 해당 대부업자의 회계처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각자 자율적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영업활동이 비슷한 대부업자간에도 회계처리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다소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원사들간 자유로운 협의로 동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었습니다. 회원사들의 관련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결산월

결산월은 12월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위 사항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을 적용 후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

재무상태표표 계정과목

□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에서의 대부업체의 재무상태(financial position)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는 기본 재무제표중의 하나이다.

대부업체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배열은 대분류 과목의 경우 일반적인 성격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분류 과목내의 계정과목 배열은 업무의 특성과 중요도 등을 감안하는 상대적 유동성 배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대부업체의 업무특성상 대부분의 자산과 부채가 가까운 장래에 회수되거나 상환되기 때문에 유동성 기준외의 거래의 성격을 감안하여 배열하는 것이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 2.19]

제 1 절 자 산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경제적 사건의 결과로 특정실체가 획득했거나 통제할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 또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용역잠재력을 가진 자원” 등으로 정의되며, 대부업체의 자산은 현금 및 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고정자산, 기타자산으로 분류한다.

1. 현금 및 예치금

가. 현 금

- 통화(지폐, 동전)와 통화대용증권(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당좌수표, 송금수표, 우편환증서 등)을 처리한다.
- ※ 현금계정은 모든 입출금내역이 종합 집계되는 총괄계정으로 자산 중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다. 현금계정은 안전한 관리와 정확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매일 잔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현금의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가수금 또는 가지금금계정으로 처리하되 단 시일 내에 원인을 규명하여 정당계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나. 예치금

- 소비입치계약으로 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자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당좌예치금, 보통예치금, 정기예치금, 적금예치금, 금전신탁, 당좌개설보증금, CD(양도성예금증서), CMA(종금 어음관리계좌), MMDA(은행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 종금사 발행어음 등으로 구분한다.

2. 유가증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2절]

○ 의 의

-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적정한 액면금액 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지분증권은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예 : 보통주, 우선주, 수익증권 또는 자산유동화 출자증권)과 일정금액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 신주 인수권 또는 콜옵션) 또는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 : 풋 옵션)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지분 증권은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지분법 적용투자주식중 하나로 분류한다.
- 채무증권은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 : 국채, 공채, 사채, 전환사채, 자산유동화채권 등)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하며,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 증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

○ 유가증권의 분류기준

- 유가증권은 취득시의 실제적인 보유의도와 능력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한다.

<유가증권의 분류기준>

구 분	분 류 기 준
단기매매증권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처리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처리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처리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출자금과 같이 주식은 아니지만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하는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에 처리

○ 유가증권의 최초인식

- 유가증권을 통제할 수 있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 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 및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 등에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시장) 정형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는, 결제일에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매매일에 유가증권의 거래를 인식한다.

○ 유가증권의 분류제한

- 당해연도와 직전 2개 회계연도 중에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전에 매도하였거나 발행자에게 중도상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만기보유증권의 분류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보유중이거나 신규로 취득하는 모든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음.

〈만기보유증권 분류제한에 대한 예외〉

1. 만기의 잔여기간 및 중도상환권 행사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공정가액에 중요한 영향이 없을 시)
2. 채무증권의 액면가액 거의 대부분(예:85%)을 회수한 후에 그 채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3. 채무증권 발행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하락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4. 법규 등의 변경에 의해 불가피하게 매도하는 경우
5. 중요한 기업결합 또는 주요 사업부문의 매각이 있을 때 기존의 이자율 위험관리 또는 신용위험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6.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비반복적인 상황 변동에 대응하여 그 채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유가증권과목으로 분류 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유가증권과목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함.
-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 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 할 수 있음.(분류제한 부분 참고)

※ 유가증권과목의 분류를 변경할 때에는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후 변경함.

○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평가

- 취득원가 = 매입가격 + 취득부대비용. 단,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의 합계액 범위내

•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처리

• 제공한 대가인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추정하여 산정

※ 취득부대비용 : 대리인 또는 중개인 수수료, 증권거래소의 거래수수료 및 세금 포함(금융비용과 보유에 따른 비용 제외)

• 만기보유증권은 취득원가와 만기상환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이차이에 대한 조정후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며(상각후취득원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 상각후 취득원가 : 채무증권의 취득원가에서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누적액을 가산 또는 차감한 금액

-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 공정가액의 측정

-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보며, 시장가격은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종가로 한다. 다만,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종가가 없으며 재무상태표일과 해당 유가증권의 직전 거래일 사이에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할 수 있다.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 직전영업일의 종가에 적절히 반영하여 공정가액을 추정하며, 일시적 거래중지 유가증권의 경우 위의 단서 이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 시장성 없는 채무증권
 -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로 평가한 미래현금흐름을 공정가액으로 본다.
 - 이러한 측정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이용하거나 채무증권의 발행기업과 유사한 특성(예 : 신용위험)을 가진 기업의 시장성 있는 채무증권의 시장가격을 근거로 하여 공정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 증권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과,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공정가액의 변동

- 단기매매증권
 -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전 장부가액과의 차이, 즉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한다.
- 매도가능증권
 -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전 장부가액과의 차이, 즉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항목(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항목의 누적금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처리한다.

○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 유가증권의 회수예상가액(추정한 금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한다. 손상차손은 당기 손익 항목(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 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

1.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청산 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경우, 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2. 이자지급과 원금상환의 지연과 같은 계약의 실질적인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채무적 곤경과 관련한 경제적 또는 법률적인 이유 때문에 당초의 차입조건의 완화가 불가피한 경우
4. 유가증권발행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은 경우
5. 과거에 그 유가증권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였으며, 그 때의 감액사유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
6.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그 유가증권이 시장성을 잃게 된 경우
7. 표시이자율 또는 유효이자율이 일반적인 시장이자율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채무증권(예:후순위채권, 정크본드)을 법규나 채무재조정협약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
8.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
9. 기타 1~8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

- 만기보유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유가증권의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회수가능금액)와 장부가액의 차이금액이다. 재무상태표의 만기보유증권 가액은 손상차손 금액을 차감한 후의 회수가능금액으로 표시한다.

○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환입

- 매도가능증권
 -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항목(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처리 한다.
- 만기보유증권
 - 손상차손은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항목(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하되, 회복후의 장부가액이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주식

-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으로 발행회사에 대한 소유권·지분을 나타내는 소유권 주식인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말하며,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뮤추얼펀드(Mutual Fund) 투자액도 주식으로 처리한다.

나. 회사채

- 회사채는 기업이 비교적 장기의 거액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발행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보증 및 담보의 유무에 따라 보증사채, 무보증사채(일반사채) 및 담보부 사채, 무담보 사채등으로 분류되며, 금리결정방법에 따라 확정이자부사채 및 변동금리부 사채로, 이익참가형태에 따라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으로 구분된다.
- 회사채의 모집방법에는 공모(公募)와 사모(私募)의 방법이 있는데 공모는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불특정다수인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에 의하여 모집하는 방법이며, 사모는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소수인에 대하여 직접 모집하는 방법이다.
- 사모채의 경우 정보의 공시의무(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등)가 면제되고 유통성이 제약된다는 점이 공모채와 다르며 이를 대부업자가 발행인 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경우에는 유가증권 내의 회사채가 아닌 대출채권 (기타대출채권)으로 분류하고 동일인에 대한 여신 한도의 적용을 받는다.

다. 수익증권

- 수익증권이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표창하고 있는 유가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은행 등)가 발행한다.
- 통상 수익증권은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하는데 주식형은 신탁 자산 총액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채권형은 신탁 자산 총액의 60%이상 채권에 투자하나 주식은 편입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혼합형은 주식형 및 채권형 이외의 수익증권을 말한다.

※ MMF(Money Market Fund)

투자신탁회사 등이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금리가 높은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콜 등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고 주식은 편입하지 않는 초단기 금융상품

라. CP(기업어음)

- CP란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으로 대부분 종금사가 이를 할인매입한 후 기관이나 일반투자자에게 다시 매출하며 종금사의 지급보증여부에 따라 담보부 기업어음과 무담보부 기업어음으로 구분된다.

- 중개시장을 통하여 매입한 CP(공모)를 처리한다.

※ 상기 외의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CP(사모)는 대출채권으로 회계(분류)처리

마. 기타단기매매 · 기타매도가능 · 기타만기보유증권

- 상기의 주식, 회사채, 수익증권, CP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을 처리한다.
-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예금(Equity Linked Deposit)등을 처리한다.

3. 대출채권

- 대출채권은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 발생시 이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한다.

가. 대출금

(1) 할인어음

- 할인어음이란 거래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할인방식으로 매입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어음을 담보의 성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할인어음계정이 아닌 해당 대출금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할인의 대상어음은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한 상업어음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기발행어음(유통어음)의 할
인도 가능하며, 할인기간은 대상어음의 만기일 내에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어음의 지급기일이 한도거래 약정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할인시점이 약정기한 이내인 경우 취급 가능하다.

<회계처리 예시>

◆ 할인매입시

(차) 할인어음 XXX

(대) 현 금 XXX

어음할인료 XXX

◆ 결산시

(차) 어음할인료 XXX

(대) 선수수익 XXX

◆ 만기회수시

- 평일의 처리

- 지급기일 제 1영업일 전에 어음을 추심의뢰 할 경우

(차) 보통예치금 XXX

(대) 가수금 XXX

- 익일 결제완료시

(차) 가수금 XXX

(대) 할인어음 XXX

- 결산일의 처리

- 지급기일 제1영업일 전에 추심의뢰 할 경우
※ 보통예치금에 입금되더라도 회계처리 없음.
- 익일 결제완료시

(차) 보통예치금 XXX

(대) 할인어음 XXX

(2) 신용대출

- 순수신용, 인적보증(개인지급보증, 연대보증) 등으로 취급한 대출금
을 처리한다.

(3) 담보대출

- 아파트 등 부동산, 동산, 주식 등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금을 처리한다.
- 오토(자동차)담보의 경우 담보대출로 처리한다.

(4) 기타대출채권

- 상기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대출금으로서 실질이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 등을 처리한다.

나. 매입채권(외부양수채권)

- 대출이 아닌 매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채권으로 분류한다. 담보 유무에 따라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정상 및 부실여부와 관계 없이 외부로부터 양수한 모든 채권을 의미한다)

다.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이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산의 건전성 정도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며, 대손충당금 계정은 대출금 등의 적정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말 현재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대손의 추산액을 공제하여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계정이다.
- 대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이를 대손발생시로 인식한다면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수익·비용 대응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대출채권 금액도 순실현가능액보다 과다하게 평가되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대출채권의 순실현가능액 평가 및 각 회계기간별 적정한 손익의 계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 현재가치할인차금(-)

- 대출채권에 있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시장이자율과의 차이로 인해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4. 유형자산

- 유형자산은 실물자산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장기간(보통 1년이상 초과)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업무용자산을 처리하며,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동산, 건설중인 자산,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구분한다.

가. 업무용 자산

(1) 토 지

- 영업소, 사택, 연수원 등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토지를 처리하는 계정이며, 토지는 물리적 파괴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그 취득가액에는 토지의 매입가격에 매입부대비용(제수수료, 등기료, 취득세, 중개인수수료 등), 가공비, 개량비 등을 포함한다.

(2) 건 물

- 업무용 건물(토지에 정착된 건조물중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과 그 일부인 부속설비(부속건물과 냉·온방설비, 전기설비, 통풍 배관설비, 조명, 승강기설비 등)를 처리하는 계정이며, 건물의 취득가액은 매입대금에 매입부대비용(취득세, 등록세, 매입수수료, 건물취득시 전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퇴거료 등) 및 이용을 위한 수리비용 등을 합산한다.
- 그리고 수선에 따른 자본적지출은 건물가액으로 합산하며, 수익적지출은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며,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개량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또한, 건물은 상각자산이므로 매년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예시

〈자본적 지출〉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온방 장치의 설치
- 빌딩 등에 있어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에 따라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전 각 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자본적 지출〉

-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전 각호와 유사한 것

(3) 차량운반구

- 자동차·버스 및 이륜차 등 육상운반구 등을 처리한다.

(4) 동 산

- 전산기기, 금고, 방송시설, 냉난방, 객장, 비품(서화, 조각품, 골동품 포함), 기계장치와 부속설비, 공구와기구 등을 처리한다.

(5)기타의 유형자산

- 상기 이외의 유형자산을 처리한다.

다. 비업무용자산

(1) 비업무용자산

- 대출금 회수를 위해 유입 취득한 유입부동산 등 업무용자산 이외의 고정자산을 처리하며, 비업무용토지, 비업무용건물, 비업무용동산으로 구분한다.

(2) 기타 비업무용자산

- 상기 이외의 비업무용자산을 처리한다.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중 유가증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처리한다.(예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라. 감가상각누계액(-)

- 대부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토지 제외)에 대한 감가상각액의 누계액을 처리한다.
- 감가상각이란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유형고정자산(토지 제외)의 원가를 그 자산의 사용에 의해 효익을 제공받는 기간에 걸쳐 내용연수 동안 취득원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당기비용 처리하고 자산의 금액을 그 만큼 차감시켜 나가는 절차를 말한다.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5. 기타자산

가. 무형자산[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 무형자산은 정상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대부업체가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영업권, 창업권, 개발비,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1) 영업권

- 영업권이란 미래에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권리로서 유상으로 취득한 것만을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자가창설영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462조제6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따라서 유상으로 영업권을 취득한 합병, 영업양수, 전세권 취득 등을 처리한다.

(2) 기타의 무형자산

- 상기 항목외의 무형자산을 처리한다.

나. 보증금

- 부동산 임차계약, 전화청약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제보보증금(전세금, 전신전화 가입금,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을 처리한다.

다. 미수금

- 대부업체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업무용 또는 비

업무용 부동산 등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미수채권을 처리한다.

라. 미수수익

- 결산시 예치금이자, 유가증권이자, 대출금이자 등 수입이 확실하고 기간 계산이 가능한 당기분 수입이자의 기말 미수액을 처리한다.
- 미수수익은 실제로 현금이 수입되지는 않았으나 발생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익으로 계상함이 타당한 부분을 당기손익에 포함시킴으로써 기간손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결산정리 계정이며,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해당 손익계정으로 환원기표 한다.
- 대출채권의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회수가능성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만 미수수익으로 인식한다.

※ 미수금과 미수수익의 차이

구 분	미 수 금	미 수 수 익
채권의 발생 형태	계약의 이행, 법적권리의 확정에 따라 발생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
채권의 확정여부	확정채권	미확정 채권
상대계정	대부분 자산계정이나 수익계정도 가능	수익계정

마. 선급비용

- 결산시 당기에 지급한 비용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비용을 처리하며, 미경과기간 해당액을 당해 비용항목 금액에서 차감 보정한다.
- 선급비용은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경우 아직 제공되지 않은 용역에 대하여 지급된 대가로서 단기간내에 비용화 되는 것을 말하며, 선급된 보험료, 임차료, 지급이자, 수선비 등이 있고,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해당 손익계정으로 환원기표한다.

바. 선급금

- 자산취득 등을 위하여 선지급한 금액을 처리한다.

사. 이연법인세자산[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일시적인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기업회계의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 이월결손금 등에서 발생한 법인세효과를 처리한다.
- 실제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와 손익계산서상에 인식된 법인세비용과의 차이를 이연법인세라 하며, 실제로 내야하는 법인세가 손익계산서상 인식된 법인세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하여 자산으로 계상하고, 적을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로 하여 부채로 계상한다.

<회계처리 예시>

◆ 법인세비용(기업회계상 비용) < 법인세부담액(세법상 부담액)

⇒ 기업회계상 보다 세법상 부담액이 많으므로 선급비용 성격으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

(차) 법인세비용	XXX	(대) 미지급법인세	XXX
이연법인세자산	XXX		

◆ 법인세비용(기업회계상 비용) > 법인세부담액(세법상 부담액)

⇒ 기업회계상 보다 세법상 부담액이 적어 추후에 납부해야 하므로 미지급비용 성격인 이연법인세부채로 계상

(차) 법인세비용	XXX	(대) 미지급법인세	XXX
		이연법인세부채	XXX

아. 파생상품자산

- 주식,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로 하는 파생금융자산 이외의 기타 파생상품자산을 처리한다.

자. 기타 잡자산

(1) 가지급금

- 가지급금은 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서 지급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이를 처리할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이러한 사항들이 확정될 때까지 지급금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그러나 가지급금은 흔히

증빙을 갖추지 못한 지출, 자금유용, 부실거래은행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 제11조에서는 “가지급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성질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가지급금 잔액이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에 나타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 가지급금(가수금도 같음)으로 처리한 것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 당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가지급계정으로 처리하는 예로는 일반가지급금으로서 경비 관련 지출, 출납 부족금, 사고피해 및 그 수습비, 외부에 대한 일시 대급금, 임차계약금 등 기타 지출이 있다. 여신성가지급금으로서는 채권보전상 소송비 기타 법적절차비, 담보물건관계 화재보험료 대급금 및 제세공과금 등이 있다.
- 여신성가지급금은 채권보전, 법적절차 및 회수절차상 부득이한 지출로서 향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신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나 차주의 상환약정 등과 같은 확정 계정처리를 할 수 없는 성격의 지출이다.

(2) 종업원대여금

- 일반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사고금정리대출 등 당해 대부업체 직원에 대한 대출금을 처리한다.

(3) 용도품

- 장부, 인쇄물, 잡품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지급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통상 금융기관에서는 통장, 증서류, 제장표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이를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용도품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사용할 때마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4) 공탁금

- 채무이행의 보증, 경매참가를 위한 매수보증금, 채권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시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 등을 처리한다.

(5) 선급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액, 원천징수세액 등 법인세 선급액을 처리한다. 기중에 원천납부한 금액과 중간예납한 금액의 합계가 당해연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할 금액, 즉 손이계산서상 “법인세비용” 으로 계상될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이 재무상태표상 선급법인세계정으로 계상하고, 신고납부할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미지급법인세계정으로 계상한다. 단, 당기분이 아닌 전기이전분의 법인세추납액은 영업외비용의 잡손실계정으로 처리한다.

(6) 기타잡자산

- 상기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처리한다.

제 2 절 부 채

부채는 회계의 주체가 과거거래 등의 결과로 미래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할 경제적 의무로서 예수금, 차입금, 기타부채로 분류한다.

1. 차입금

- 차입형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일정기간 후에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를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차입형태에 따라 차입금, 사채 등으로 구분한다.

가. 차입금

(1) 금융기관차입금

- 은행 등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장단기차입금을 처리한다.

(2) 일반차입금

- 금융기관차입금을 제외한 일반 법인, 개인 차입금을 처리한다. 대부업 차입금도 포함한다.

나. 사 채

- 대부업체는 공모사채를 발행하지 않아 사모사채를 발행한 경우 동 발행 금액을 처리한다.

다. 사채할인발행차금(-)

- 사채의 발행가액은 발행조건에 따라 액면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사채의 표시(액면)이자율과 시장(유효)이자율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채권발행회사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채권의 액면가액보다 적은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으로써 시장이자율이 표시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하며, 동 계정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채권기간에 배분되도록 상각처리하고 동 상각액은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라. 사채할증발행차금(+)

- 사채를 할증 발행하는 경우, 즉 채권발행시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채권의 액면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으로 시장이자율이 표시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채 발행형태 따른 발행차금 관계〉

발행형태	금액관계	이자율관계	사채발행차금	채권발행자의 이자비용
할인발행	액면가액 > 발행가액	표시이자율 < 시장이자율	사채할인발행차금	총이자비용 = 현금으로 지급될 이자액 + 채권할인발행차금
액면발행	액면가액 = 발행가액	표시이자율 = 시장이자율	—	총이자비용 = 현금으로 지급될 이자액
할증발행	액면가액 < 발행가액	표시이자율 > 시장이자율	사채할증발행차금	총이자비용 = 현금으로 지급될 이자액 - 채권할증발행차금

2. 기타부채

가. 퇴직급여충당금

- 장래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결산시 적립하는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퇴직급여는 임·직원의 노동력의 대가의 성격으로 그 재직기간의 각 사업연도에 적정하게 부담시켜 기간손익을 적정화하기 위해 설정되는 충당금이다.
- 퇴직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하고, 확정기여제도에서는 비용으로, 확정급여제도에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를 설정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실제 임·직원의 퇴직시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명예퇴직금의 경우 일반퇴직금과는 달리 근속기간 이외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없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미지급금

-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지급채무(미지급비용제외)로 특정계약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채무중 아직 지급이 끝나지 않은 미지급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다. 미지급비용

- 미지급비용은 당기에 부담해야 할 이자 및 비용 중 기중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처리하는 결산계정으로 자산계정의 미수수익계정과는 달리 모든 미지급이자 등을 전액 당기비용으로 계상하며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손익계정으로 대체 환원 기표한다.

※ 미지급비용의 보정방법

- 기말일 현재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예적금이자, 지급이자, 재할인어음이자, 콜머니이자, 일반관리비 등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한 금액을 합산하여 모두 당기 부담비용으로 처리한다.
 - 계금, 부금 및 적금의 이자
납입된 계금, 부금 및 적금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액(특별이자 제외).
다만, 부금납입 유예대출 관련 부금을 포함하여 월부금을 3회이상 납입하지 않는 계좌는 중도해지계좌로 보고 기말일까지의 중도해지이자액
 - 보통예금, 정기예금(복리식정기예금 포함), 근로자장기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차입금(콜머니 포함)의 이자
당초 약정이율을 적용 계산한 기간 경과분 미지급이자액
 - 일반관리비 등
계약 또는 약정에 의한 기간경과분 미지급액

라. 선수수익

- 선수수익은 자산계정의 선급비용계정과 같이 결산보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계정으로 결산시 당기에 수입한 수익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속하는 미경과 수익(대출금이자, 수입임대료 등)을 처리하며,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해당 손익계정으로 환원기표 한다.

마. 수입보증금

- 계약보증금, 임대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수입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바. 이연법인세부채

-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일시적인 차이로 인하여 기업회계의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처리한다.
⇒ 자산계정의 “이연법인세자산” 해설 참조

사. 파생상품부채

- 주식,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금융부채 이외의 기타 파생상품부채를 처리한다.

아. 기타 잡부채

(1) 가수금

- 처리할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이어서 정당계정 처리가 어려울 때 정당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 가수금 처리후 6월 이내에 정당계정으로 정리해야 한다.
(예) 출납잉여금, 업무용·비업무용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의 매각내입금, 할인어음 등 추심금 일시내입 등

(2) 수입제세

- 수입제세는 이자, 배당, 급여 등의 지급시 원천징수한 소득세, 법인세 등을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할 때까지 처리하는 계정이다.

(3) 미지급법인세

- 당기에 부담할 법인세 등의 미납부액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결산시에 당해 사업연도와 추산 법인세액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액과 원천납부 법인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처리한다.

(4) 국민연금전환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각출료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을처리하였던 계정이나 퇴직전환금제도가 1994.4.1.부터 폐지됨에 따라 퇴직금지급시에는 제도폐지 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국민연금전환금을 지급한다.

(5) 퇴직보험예치금(-)

- 단체퇴직보험과 종업원퇴직신탁에 가입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외에서 적립하는 경우의 보험료 납입액을 처리한다.

(6) 기타파생상품부채

- 주가지수선물·옵션 이외의 파생상품중 포지션에 따라 결제시점에서 현금 지출을 수반하게 되는 기타의 파생상품을 처리한다.

(7) 기타잡부채

- 상기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부채를 처리한다.

자. 기타부채성충당금

- 기타부채성충당금을 처리한다.

제 3 절 자 본

1. 자본금

- 자본금이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

가. 보통주자본금

- 특별한 권리 내용이 없는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본금을 처리한다.

나. 우선주자본금

- 보통주에 비해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우선권을 갖는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본금을 처리한다.

2. 자본잉여금

- 자본잉여금은 주금의 납입과 환급 등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한 잉여금으로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과 구분되며, 자본전입이나 결손보전의 목적으로만 처분이 가능하다.

가.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발행초과금이란 주식발행가액(증자의 경우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신주발행수수료 등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반면,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자본조정계정으로 처리한다.

나. 기타자본잉여금

-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차감한 금액과 기타 자본잉여금을 처리하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차감하고 그 잔액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

다. 재평가적립금

-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유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재평가차액(평가액 - 장부가액)을 처리한다. 자산재평가법 제41조에서는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만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3. 자본조정

- 자본조정이란 순자산을 변동시키는 경제적 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동 자산의 증감에 대응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시적 성격의 자본계정을 말하며,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기타 자본조정으로 구분한다.

가. 자기주식

-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그 취득경위·향후 처리계획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자기주식이란 기 발행주식중 발행회사가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사외에 유통되지 않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이익배당청구권 및 유무상 증자시 신주를 인수할 권리도 없다.
- 자기주식처분손익 회계처리방법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중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며,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계상된 기타자본잉여금에서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 결손금 처리 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나.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액면금액과 실제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주식을 액면발행하는 경우에도 신주 발행비가 발생하면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계상한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하면 주식발행연도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3년 이내의 기간을 상각기간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1년내 일시상각 또는 2년간 균등 상각도 가능하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이후 연도에 이우려하여 상각할 수 있다. 또한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발생순서에 관계없이 서로 상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 신주발행비의 회계처리

구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신주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분류하였으나 현행은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 또는 주식발행초과금에 직접 가감하여 조정된다.

다. 기타자본조정

- 기타자본조정 항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자기주식처분손실,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처리한다.

4.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동 평가손익은 해당이 곤란한 보유손익으로 보아 사외유출 할 수 없도록 자본조정항목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
-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당해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시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손실)에 차감(부가)하여야 한다.

나. 기타

- 상기 이외의 항목 등을 처리한다.

5.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결과 발생한 이익중 사내에 유보 또는 축적된 이익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처분이 엄격히 제한되는 자본잉여금과는 달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임의 처분이 가능하다.
-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결손금보전에 따른 이입액 등으로 증가하며, 당기순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또는 배당금의 지급에 의해 감소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4장 “보고기한후사건”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용을 재무상태표에 반영하

지 않으므로 “처분전이익잉여금(또는 처리전결손금)” 계정으로 표시한다.

※ 종전내용

-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은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또는 결손금처리) 결과를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하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한 미지급 배당금은 기타부채의 잡부채중 미지급배당금 계정에,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자본조정의 미교부주식배당금 계정으로 처리하였음.

가. 이익준비금

- 상법 제458조에서는 매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나. 기타이익잉여금

- 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기업발전적립금, 배당준비금, 임의적립금을 말한다.

다. 처분전이익잉여금(또는 처리전결손금)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4장 “보고기한후사건”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용을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상의 “처분전이익잉여금(또는 처리전결손금)”과 동일하게 표시한다.

※ 차기이월이익잉여금(또는 차기이월결손금) ⇒ 처분전이익잉여금
(또는 처리전결손금)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대부업체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동태적 재무보고서로서 기본 재무제표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경영성과의 의미는 경영성적을 뜻하는 것으로 일정기간의 수익의 산정, 일정기간의 비용의 산정, 순손익의 결정이라는 세가지 과정이 포괄된 것이다.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가. 당기 경영활동에 대한 성과 측정
- 나. 수익력을 판단할 수 있고, 미래의 순이익흐름을 예측
- 다. 경영계획, 배당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자료
- 라. 경영분석의 중요자료(특히 수익성 지표)
- 마. 경영자의 경영능력, 경영업적 평가

제 1 절 수 익

1. 영업수익

가. 이자수익

(1) 예치금이자

-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자금 등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처리한다.

(2) 단기매매증권이자

- 단기매매증권 보유에 따른 수입이자를 처리한다. 유가증권을 만기전에 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동안의 이자수입액을 처리하되 매매손익과 상계하지 않는다.

(3) 매도가능증권이자

- 매도가능증권 보유에 따른 수입이자를 처리한다

(4) 만기보유증권이자

- 만기보유증권 보유에 따른 수입이자를 처리한다.

(5) 대출금이자

대출금이자란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대가로 수입하는 이자를 말하며, 약정이자 외에 연체이자도 포함한다.

(가) 어음할인료

- 할인어음에서 발생한 할인료수입액을 처리한다.

(나) 신용대출이자

- 신용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액을 처리한다.

(다) 담보대출이자

- 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액을 처리한다.

(라) 기타대출 채권이자

- 기타대출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액을 처리한다.

(6) 기타이자수익

(가) 종업원대여금이자

- 직원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의 종업원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액을 처리한다.

(나) 수입잡이자

- 다른 항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상의 이자수입액(계금, 부금 등의 분할상환금 및 이자에 대한 연체료, 가지급금, 미수금 등의 이자, 공탁금에 대한 이자 등)을 처리한다.

나. 매입채권 회수 및 처분이익

- 매입채권의 회수 및 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액을 처리한다.
- 채권의 원가 산정시 개별채권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서도 개별채권의 원가를 초과하는 금액 회수시 이익을 산정한다. 다만 개별채권의 매입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 매입가액을 합리적인 기준(예 : 매입일 현재 각 매입채권의 원금잔액의 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개별채권의 매입금액으로 한다.

다.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1)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결산일 현재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가액보다 공정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를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으로 처리한다.

(2)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 단기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관련 제 비용을 차감한 후의 매각가액이 장부가액을 상회한 때 그 초과금액(처분이익)을 처리한다.
-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시 발생하는 제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고 처분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매각대금에서 직접 차감한다.

(3)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시 발생하는 이익을 처리한다.

(4) 만기보유증권처분이익

- 만기보유증권의 처분시 발생하는 이익을 처리한다.

(5) 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환입

-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회복된 금액을 환입처리 한다. 환입한도는 회복후의 장부가액이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 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대손충당금환입 및 처분이익 등

(1) 대손충당금환입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거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이 금기의 요적립 대손충당금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처리한다.

(2) 대출채권처분이익

- 대출채권을 여신금융기관 등에 매각하는 경우 발생한 매각이익을 처리한다.

라. 수수료수익

(1) 중도해지수입수수료

- 대부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수취한 중도해지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한다.

(2) 대부중개수수료

- 대부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처리한다.

(3) 기타수입수수료

-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는 기타수수료 수입액을 처리한다.

마. 배당금수익

(1) 단기매매주식배당금

- 단기매매주식에 대한 현금배당금을 받은 경우 처리하는 계정으로 배당 결의일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무상증자와 동일하게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지 유가증권 관련 장부에 주식수와 주당가격만을 조정한다.

(2) 매도가능주식배당금

- 매도가능주식에 대한 현금배당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단기매매주식배당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바. 기타 영업수익

(1) 외환차입(환산) 이익

- 외환차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처리한다

(2) 기타파생상품거래이익

- 기타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이익을 처리한다.

(3) 기타파생상품평가이익

- 결산시 현재 기타파생상품의 평가에 따른 이익을 처리한다.

(4) 선수수익환입

- 전기말에 계상한 미수수익 보정액의 환입액을 처리한다.

(5) 미지급비용환입

- 전기말에 계상한 미수수익 보정액의 환입액을 처리한다.

(6) 기타영업잡수익

- 사채상환이익 :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을 처리한다. ⇒ “사채상환손실계정” 참조
- 상기에 속하지 않는 영업 관련 제수익을 처리한다.

2. 영업외수익

- 영업외수익이란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보조적(부수적)인 영업활동에서 정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비반복적이고 비정상적인 특별

이익과 구분된다.

가. 유형자산처분이익

(1) 업무용자산처분이익

- 업무용자산 처분시 처분가액이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하며, 여기에는 자체 폐기하는 경우의 잔존 장부가액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2) 비업무용자산처분이익

- 비업무용자산을 장부가액 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한다.

다. 수입임대료

-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수익을 처리한다.

라. 지분법이익

- 지분법 적용대상 투자주식에서 발생하는 평가이익을 처리한다.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시 발생하는 이익을 처리한다.

마. 전기오류수정이익

- 전기이전에 발생한 오류 수정이익을 처리한다.

바. 기타영업외수익

(1) 유입물건운용수익

- 담보권 실행으로 유입한 유입물건의 운용수익을 처리한다.

(2) 비업무용부동산손상차손환입

- 전기이전에 감액처리한 비업무용부동산이 감액사유가 해소(공매가격의 상승 등 부동산가치의 회복)된 경우 그 환입액을 처리한다.

(3) 잡이익

- 상기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 영업외수익(시효완성된 제예금, 상각 채권에 대한 이자, 부동산매매계약 위약에 따른 위약금, 할부매매계약 이행 비율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등)을 처리한다.

사. 자산수증이익

- 주주, 채권자 등 주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 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을 처리하며, 수증 받는 자산의 종류는 묻지 않고 모두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며 자산수증이익의 회계처리 시기는 실제로 자산을 수증 받은 때이다.

아. 기타특별이익

- 기타특별이익은 비정상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기타특별이익 등으로 한다.

(1) 채무면제이익

-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생긴 이익을 처리한다.

(2) 보험차익

- 재해 등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액이 손실액(피해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한다.
- 보험차익은 보험사고로 발생한 인적·물적 총손실액과 수령한 보험금액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3) 기타특별이익

-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은 특별이익을 처리한다.

제 2 절 비 용

1. 영업비용

가. 이자비용

(1) 차입금이자

(가) 금융기관차입금이자

- 금융기관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처리한다.

(나) 일반차입금이자

- 일반법인, 개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를 처리한다.

(2) 사채이자

- 사모사채 발행에 따른 지급이자를 처리한다.

(3) 기타이자비용

(가) 지급잡이자

- 잡이자 지급액을 처리한다.

나. 매입채권처분손실

- 매입채권의 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액을 처리한다.

다.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1)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 결산일 현재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가액보다 공정가액이 낮은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를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로 처리한다.

⇒ 자세한 내용은 자산중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참조

(2)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 단기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관련 제 비용을 차감한 후의 매각가액이 장부가액을 하회한 때

그 미달하는 금액(처분손실)을 처리한다.

-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시 발생하는 제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고
처분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매각대금에서 직접 차감한다.

(3)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시 발생하는 손실을 처리한다.

(4) 만기보유증권처분손실

- 만기보유증권의 처분시 발생하는 손실을 처리한다.

(5) 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

⇒ 자세한 내용은 자산중 “유가증권의 손상차손”을 참조

라.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1) 대손상각비

- 결산일 현재 추가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적립액과 충당금잔액을
초과하는 회수불능채권 상각액을 처리한다.

◆ 기말결산시

- 대손추산액 > 대손충당금 잔액

(차) 대손상각비 XXX

(대) 대손충당금 XXX

- 대손추산액 < 대손충당금 잔액

(차) 대손충당금 XXX

(대) 대손충당금환입 XXX

◆ 채권의 대손발생시

- 대손충당금 잔액 > 대손발생액

(차) 대손충당금 XXX

(대) 대출채권 XXX

- 대손충당금 잔액 < 대손발생액

(차) 대손충당금 XXX
대손상각비 XXX

(대) 대출채권 XXX

◆ 대손처리한 채권의 회수시

⇒ 상각채권을 원상회복 시킨 후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 상각채권의 원상회복(일부 회수시 일부 원금만 회복)

(차) 대출채권 XXX

(대) 대손충당금 XXX

- 채권의 회수

(차) 현 금 XXX
 XXX

(대) 대출채권 XXX

(2) 대출채권처분손실

- 대출채권을 여신금융기관 등에 매각하는 경우 발생한 매각손실을 처리한다.
- 자산건전성분류를 차주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각채권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대출채권매각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부가액(명목가액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조정(상계처리 하는 대손충당금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한다. 다만, 개별채권별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매각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회계처리 예시>

◆ 대출금 : 1,000 대손충당금 : 500 매각금액 : 600

- 대손충당금 일괄 적립시

(차) 현 금 600
 대손충당금 400

(대) 대출금 1,000

- 개별채권별로 대손충당금 적립시

(차) 현 금 600
 대손충당금 500

(대) 대출금 1,000
 대출채권매각익 100

마. 수수료비용

- 연체대출금회수수료 등 수수료비용, 세무조정 및 회계감사수수료, 금융감독원검사수수료, 상각채권추심수수료, 자금이체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등 기타지급수수료를 처리한다.

바. 판매비와 관리비

- 대부업체의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관리와 유지에 발생하는 제비용을 처리한다.

(1) 인건비

- 임직원에 대한 급여, 임금, 제수당, 상여금, 연월차휴가보상금 및 특수급여 등을 처리한다.

※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의 구분(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 다음의 경우 인건비로 구분
 -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임원의 경우 정관, 주총, 이사회에서 결정된 경우에 한함)
 - 불우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중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여비·교통비를 초과한 부분)
 -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중 법인이 부담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
 - 훈련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현물급여
 - 자가운전보조수당으로서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경 비

○ 광고선전비

○ 중개수수료

-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대출시 대부중개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관련된 비용을 처리한다.

○ 기타 경비

- 대부업체의 관리와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인건비외의 업무와 관련된 제비용을 처리한다.

- 경비로 처리하는 세목에는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전력 및 수도료, 도서인쇄비, 세금및공과금, 임차료, 차량비, 소모품비, 전산 업무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접대비, 운반 및 보관료, 연료및유류비, 등기소송비, 회의비, 연수비, 용역비, 연구비, 경상공발비, 잡비 등이 있다.

사. 기타영업비용

(1) 외환차입(환산) 손실

- 외환차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처리한다

(2) 사채상환손실

- 사채를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처리한다.

(3) 미수수익환급

- 전기말에 계상한 미수수익 보정액의 환급액을 처리한다.

(4) 선급비용환급

- 전기말에 계상한 선급비용 보정액의 환급액을 처리한다.

(5) 기타영업잡비용

- 상기 항목 이외의 영업잡비용을 처리한다.

2.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이란 주된 영업활동인 금융거래에 수반된 영업비용을 제외한 영업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가. 유형자산처분손실

(1) 업무용자산처분손실

- 업무용자산 매각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하며, 직접 매각하는 경우외에 자체 폐기하는 경우 장부가액도 동 계정에 의해 처리한다.

(2) 비업무용자산처분손실

- 비업무용자산을 장부가액 이하로 처분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한다.

나. 지분법손실

- 지분법 적용대상 투자주식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실을 처리한다.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시 발생하는 손실을 처리한다.

다. 비업무용부동산손상차손

- 유입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시 공매금액 또는 계약금액이 장부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처리한다.

<회계처리 예시>

◆ 공개매각시

⇒ 유입부동산 취득가격(제비용 포함) : 1억원

1) 1차공매 : 유찰시 손상차손 없음

- 공매예정가격 : 1억원

2) 2차공매 : 유찰시 손상차손 10백만원

- 공매예정가격 : 90백만원
- 회계처리

(차) 비업무용부동산손상차손 10백만원 (대) 비업무용자산 10백만원

◆ 수의계약서

⇒ 유입부동산 취득가격(제비용포함) : 1억원

(차) 비업무용부동산손상차손 10백만원 (대) 비업무용부동산 10백만원

- ◆ 다만,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아니한 비업무용부동산을 기중에 수의 계약 또는 공매에 의하여 처분을 완료(매각대금 수납)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함.

라. 전기오류수정손실

-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비용(손익)으로 처리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의 잔액을 수정하여야 한다.

※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오류를 말함.

바. 기타영업외비용

(1) 기부금

-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금전, 기타의 자산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금전 등(국군장병위문금, 수재의연금 등)을 처리한다.

(2) 유입물건관리비

- 담보권 실행으로 유입한 비업무용자산의 관리에 지출한 제 비용을 처리한다. 다만, 유입물건 취득시 지출한 관련비용(취득세, 등록세 등)은 취득가액(장부가액)에 합산하여 처리한다.

(3) 잡손실

- 다른 계정에 속하지 않는 법인세추납액 및 금융리스에 대한 리스료 등을 처리한다.

(4) 기타

- 상기 항목 이외의 영업외비용을 처리한다.

사. 재해손실

- 화재, 풍수해, 지진, 침수해 등 천재지변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제 손실액을 처리한다.

아. 기타특별손실

- 재해손실 외의 비정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처리한다.

※ 손익항목은 특별손익으로 분류하여야 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경상손익 항목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음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 특별손익으로 분류

- 비정상성 : 영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당해손익을 발생키는 거래나 사건이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과 명백하게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함.

- 비반복성 : 영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이나 거래가 예측가능한 장래에 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함.

4. 법인세비용

-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액에서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처리한다.
- 또한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이는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 과목으로 처리하고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와 상계한다.

5. 당기순손익

- “당기순손익”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